

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 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51 |
|----------|-----|

2022년 9월 26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8월 29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2년 9월 2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)

가. 제안이유

- 마포주민편의시설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·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을 도모하며,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.
-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주민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중이며, 2022년 12월 29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□ 위탁사무명: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

□ 위탁기간: 3년('22.12.30.~'25.12.29.)

□ 민간위탁 필요성

-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

□ 위탁사무 내용

-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 처리
- 부대시설(주차장 등) 설치와 관리
- 주민 이용자의 소통체계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편의 증진
-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

□ 시설 개요

- 시설명/소재지: 마포주민편익시설/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40
- 규 모: 연면적 $4,754m^2$, 지하2층/지상4층, 별관 1동
- 주요시설: 어린이집, 독서실, 헬스장, 실내골프, 목욕탕 등
- 준공년월 및 이용대상: 2009. 12.,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
- 주요 시설 사진

| | | | |
|---|-----|--|-------|
|  | 위치도 |  | 시설 전경 |
|---|-----|--|-------|

□ 수탁자 선정 방식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※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('22. 7. 20.)

□ 소요예산: 운영비 지원 없음(수익창출형, 시설이용료 수익금으로 운영)

□ 기대효과

-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시설 운영을 통한 효율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
- 민간 운영을 통해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기대
- 서울시 별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피재황)

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민간위탁 조례")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<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>

-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**
-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나. 검토 의견

1)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

- 서울시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2009년부터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.

동 시설은 연면적 $4,754m^2$ (지하 2층과 지상 4층) 규모로 골프연습장, 헬스장, 독서실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되어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계약을 통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, 동 시설이 위치한 상암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우나 시설에 대해 20% 할인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¹⁾.

<마포주민편익시설 일반 현황>

| 시설명 | 마포주민편익시설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위치 |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40 |
| 개관일 | '10. 2. 1. |
| 수탁기관 | 마포구시설관리공단 |
| 민간위탁유형 | 자립형 |
| 위탁기관 | '19.12.30.~'22.12.29. |
| 규모(연면적) | $4,754m^2$ (지하 2, 지상 4) |
| 용도 | 골프연습장, 헬스장, 독서실, 어린이집 등 |
| 주변영향지역 주민이용료 할인율 | 일부 20%(사우나) |
| 주관부서 | 자원순환과 |

2)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

- 본 동의안은 마포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²⁾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.

1)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음.

2) 제8조(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1.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
 2.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 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

이는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와 “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”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.

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>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~2. (생략)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(생략)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~8. (생략)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3)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, 추진근거 및 필요성, 위탁사무 내용,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.

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>

제4조의4(민간위탁 동의안)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위탁사무명 |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|
| 3. 위탁사무 내용 | <u>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</u> |
| 5. 민간위탁기간 | 6. 수탁자 선정방식 |
|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| 8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|
| 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| |

4) 민간위탁 추진 절차

- 민간위탁 재위탁(공모) 사업은 사전조사 → 추진계획 수립 →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→ 시의회 보고(동의) → 시의회 의결 →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.
- 마포주민편익시설은 2022년 12월 29일 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 6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³⁾이 수립된 이후,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적정⁴⁾한 것으로 심의 하였음.

<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>

| 부서명 | 위탁사무명 | 유형 | | 위탁기간 | 심의결과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|
| 자원순환과 |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| 재위탁 (공모) | 자립 | 3년 | 적정 | |

5) 종합 의견

-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,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, 민간위탁 추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⁵⁾에 따르면, 종합평가 결과는 양호하나, 2016년 이후 연간 이용자 수가 감소 추세인 점과 직원 모집공고 시 의무 사항 불이행⁶⁾, 직원 필수교육(성희롱·성폭력 교육) 수료증 미제출 등의 문제

3)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(재위탁)(자원순환과-24423, '22.6.21.)

4)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(자원순환과)(조직담당관-24472, '22.7.26.)

5)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-마포주민편익시설-('22.06., 서울특별시)

6) 2021년 기술직(전기, 7급) 직원 채용 공고 시 의무사항 불이행

(협약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, 민간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하나,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가 누락됨)

점이 지적된바, 서울시에서는 지도·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 번 호 | 151 |
|--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마포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·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을 도모하며,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
- 나.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주민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중이며, 2022. 12. 29.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
- 나. 위탁기간 : 3년 ('22. 12. 30. ~ '25. 12. 29.)
-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 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필요성

-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
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 시설을 안전하고
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운영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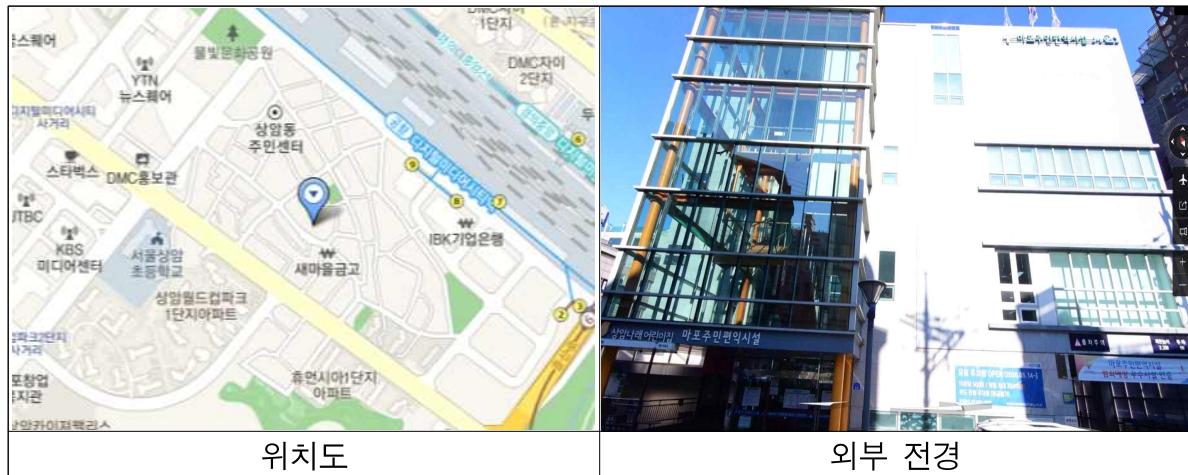
라. 위탁사무 내용

-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
-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
- 부대시설(주차장 등) 설치 및 관리
- 주민이용자의 소통체계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편익증진
-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

마. 시설개요

- 시 설 명 : 마포주민편익시설
- 소 재 지 :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40 (상암동 17-2)
- 시설규모 : 지하2층/지상4층, 별관 1동
- 연 면 적 : 4,754m²
- 주요시설 : 어린이집, 독서실, 헬스장, 실내골프, 목욕탕 등
- 준공일자 : 2009. 12.
- 이용대상 : 마포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

○ 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

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※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('22.7.20.)

사. 소요예산 : 운영비 지원 없음(자립형으로 시설이용료 수익금으로 운영)

아. 기대효과

-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운영·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
- 민간 운영을 통해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기대
- 서울시 별도 예산 지원없이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 기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제20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)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제8조(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
2.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마포주민편익시설 |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관리팀 강현주 (☎ 2133-3699)